

●**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 제2026-07호**

시정권고 재결

2025년 12월 11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1월 16일

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

**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6-07호(시정권고 재결공고[부산해심 제2025-043호
(석유제품운반선 아람 해양오염사건)])**

사 건 명 : 석유제품운반선 아람 해양오염사건

해양사고관련자 : 안*** ****(**** **)

부**** ** *** **** **, ****(*****)

귀사가 안전관리대행자로 있었던 아람호가 2024. 5. 9. 06:58경 전남 여수시 소재 여수항 D-1 정박지 해상에서 360L의 중유를 유출하였습니다.

이 해양오염사건은 ‘고수위 경보장치’를 켜지 않은 채 하역 작업을 하다가 2번 화물창의 기름이 공교롭게도 고장난 유입밸브를 통해 4번 우현 화물창으로 유입되면서 이 기름이 결국 화물창을 채우고 바다로 유출된 것으로 ‘고수위 경보장치’를 켜지 않은 일등항해사의 과실이 주요한 원인이며, 이를 알 수 있었 으면서도 바로잡지 않은 선장의 과실이 부차적 원인입니다. 다만, 안전관리대행자가 하역안전 점검표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서류 작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되는 과정이 있었다면 이 사고를 방지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입니다.

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, 선박에서 안전관리 절차서에 따라 잘 이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